

1. 學校用地確保에 관한 特例法 施行令

大統領令 第15,165號 1996. 11. 2

주 요 골 자

- 가. 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1천만제곱미터이상인 개발사업으로 함(영 제3조).
- 나.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상 가등의 경우에는 건축용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영 제4조 제1항).
- 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함(영 제6조 제3항).
- 라.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서 정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시설기준등 학교용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각급학교가 공공의 운동장 또는 종합체육시설에 인접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법제처 제공〉

개 정 이 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1995. 12. 29, 법률 제5072호)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범위안에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정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개발사업지역안에서 당해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급학교의 시설기준등 학교용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등) ①학교 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그 의견서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면적이 1천만제곱미터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4조(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상

가 등이나 용지를 분양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며, 제1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제2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3호의 경우에는 건축용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2.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공동주택의 건축용지를 분양받아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자가 상가등을 건축하는 경우 그 상가등
3. 공동주택외의 주택·상가 등의 건축용지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사업시행자(분양받은 토지에 공동주택·상가 등을 분양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양대상자 확정일까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상가 등이나 건축용지의 분양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분양대상자 확정일이후 15일 까지 분양받는 자 및 분양내역 등 분양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분양계획 또는 분양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분양자료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금액·납부기

한·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15일전까지 부과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①법 제6조 제1호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라 함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말하며, 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당해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도귀속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③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

금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완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학교용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그 기준의 100분의 20이내로 하되, 각급학교가 공공의 운동장 또는 종합체육시설에 인접하여 그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계획 및 분양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또는 분양자료 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분양계획 및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